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
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7일

발의자 : 소형준, 정운주, 임태근, 양순임,
이용진, 김육영, 김경이, 정해숙,
정기혁, 진선아, 박영섭

1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하며, 이후에 상위법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시 자치구조례에도 연동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19일에 의결한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관련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기준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[별표 6]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나.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부패방지

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4. 7. ~ 2023. 4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국외에 여행할”을 “국외 여행을 할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여비의 지급기준)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[별표 6]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및 제4조”를 “, 제3조, 제4조”로, “의정활동비 및”을 “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(철도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)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</u></p>	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국외 여행을 할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여비의 지급기준) <u>국내·외 여비는 [별표1]에 따라 지급한다.</u></p>	<p>제6조(여비의 지급기준) <u>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[별표 6]에 따라 지급한다.</u></p>
<p>제7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<u>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p> <p>① -----, 제3조, 제4조-----의 <u>정활동비, 월정수당, -----</u>. <단서 삭제></p> <p>② <u>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</u></p>

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